

96.5

항 소 장

원고(항소인) 김 편 우

인천광역시 옹진군 배령면 진촌리 525

원고(항소인)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

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해운센터빌딩 본관 17층

(Tel. 753-2151 / Fax. 753-0373~0375)

담당변호사 김 창 준

피고(피참소인) 옹진축산업협동조합

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431의 24

대표자 조합장 전 서 병

위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95가합16499호(민사 5부)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1996.4.17. 동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.

원 판 결 의 표 시

- 주 문 :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(원고의 판결정본 수송 달일 : 1996. 5. 4.)

합동법률 韓美合同法律事務所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해운센터본관 17층 대표전화 753-2151

불복 정도 및 항소 범위

원고는 원판결에 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아래와 같이 항소합니다.

항 소 취 지

1. 원판결을 취소한다.
 2.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.
 3. 피고는 원고에게 1995.9.13.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 시킬 때까지 월 금1,846,080원의 비유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라.
 4. 소송비용은 1,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소 이유 및 입증 방법

추후 변론시 개진 입증코져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항소장 부분 1통.
2. 소송위임장 및 지성서 각 1통.
3. 납부서 1통.

!!

1996. 5.

원고(항소인)의 소송대리인
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
담당변호사 金 昌 俊

서울고등법원

귀중